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6. 11(목) 총 1매	
담당 부서	부동산산업과	담당자	•과장 유혜령, 사무관 심재문 •☎ (044) 201-3411, 3415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중개대상물 표시 · 광고의 세부기준,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 지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(서울경제 '20.6.11.) >

- ◆ 중개사 허위매물 적발 용두사미? ... 반대에 단속범위 줄었다.
- ◆ 단속기능은 한국감정원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

- ☐ 기사에서 언급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(안)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중개대상물 표시 · 광고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등을 고시로 위임하였고, 현재 고시(안)을 마련 중인 단계로,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- 또한, 중개대상물 표시 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의 수탁기관도 모니터링 업무의 전문성,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를 통해 지정할 예정입니다.
- 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관한 고시는 이 달 중에 행정예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심재문 사무관(☎ 044-201-34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